

개정 예고문

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3. 16.

대한체육회장

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전국종합체육대회 유치 제한 규정(개최 후 7년 경과)을 삭제하여 회원 시도체육회 유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, 종목 추가 및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사항 반영
- 전국종합체육대회와 관련된 마케팅 권리 사항이 「마케팅 규정」과 「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」에 분산되어 있고, 보유 및 위임할 수 있는 권리의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, 하위규정인 「전국종합체육대회 마케팅 시행세칙」으로 일원화 및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【제5조】 대회기간 협의 주체 및 승인 사항 명확화
- 【제18조】 전국체육대회 개최 후 7년 경과 시에만 전국종합체육대회 유치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제한 규정 삭제
- 【제29조】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 조정에 따른 현행화
 - (전국체육대회) 정식종목 47개 → 49개(합기도, 족구 추가)
 - (전국소년체육대회) 정식종목 36개 → 40개(산악, 스쿼시, 합기도, e스포츠 추가)
 - (전국체육대회,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명 수정) 자전거 → 사이클
 - (전국소년체육대회 세부종목 추가에 따른 종목명 수정) 에어로빅 → 에어로빅힙합
- 【제29조⑤항】 시범종목의 정식종목 전환 요건 강화
 - 최근 3년간 8개 시도 이상 연속 참가 요건 추가 및 정식종목 전환 적용 시기 명시
- 【제30조】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저조 세부종목 정비

- 참가 규모가 지속적으로 세부종목에 대한 개편(폐지 또는 개편)을 통해 종목 수 최적화
- 【제3조, 제10조(삭제), 제12조(삭제), 제37조, 제39조】 전국종합체육대회 마케팅 권리 체계 정비
- 전국종합체육대회 마케팅 권리의 구분 및 행사 기준을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

3. 의견제출

- 이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의 일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- 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- 붙임 1.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일부 개정안 1부.
2. 신·구조문대비표(일부개정안의 경우에 한함).